

의안번호	2204874
의 퇴 인	박수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F449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7,191억원, 2029년 8,105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2조 2,957억원(연평균 7,652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0조의32)	7,191	7,661	8,105	22,597	7,65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2 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	○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○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액은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환류항목에 추가 - 동 제도에 따른 추가과세 대상소득인 미환류소득에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액을 제외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0조의32 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~2028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~2029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29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2023년 기준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(2024.10.)¹⁾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동 제도로 인한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, 대체로 법인세 실적과 증감방향이 동일
 - 법인세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2021년 및 2022년에는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이 증가하였으나, 감소세를 보였던 2023년에는 같이 감소
- 개정안은 적용기한 연장 외에도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을 동 과세 특례에 따른 추가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배당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 소득 중 투자, 임금 증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(이하 ‘미환류소득’)에 대하여 20%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: 2024~2028」

- 동 제도는 기업소득이 투자,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
 - 2021년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서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축소
- 동 제도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법인에 대해 미환류소득의 20%를 추가적으로 과세
 - 미환류소득은 법인소득의 일부 중 투자, 임금 증가,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등에 활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
 - ※ 소득 × 70% - [투자 + 임금 증가 + 상생협력 지출]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특례실적) 최근 5년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규모는 2019년 8,544억원에서 2022년 1조 3,339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, 2023년 5,818억원으로 감소

- 동 기간 법인세 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보면,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법인세 실적의 증감 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남

[표 2]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규모 추이

(단위: 억원, 조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(억원)	8,544	10,658	11,857	13,339	5,818
법인세 실적(조원)	72.1	55.5	70.4	103.6	80.4

주: 연도는 신고 기준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치(2024.10.)를 적용하여 전망
 - 2023년 기준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신고실적(5,818억원)을 바탕으로 향후 연도별 법인세 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3]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추정치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	7,191	7,661	8,105
법인세 증가율 전망	6.7	6.5	5.8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7,191억원, 2029년 8,105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2조 2,957억원(연평균 7,652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0조의32)	7,191	7,661	8,105	22,597	7,65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